

제335회 제1차정례회
제1차 기획경제위원회
2022. 10. 5(수)

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85
제출일자	2022. 9. 23.
회부일자	2022. 9. 28.

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김창혁 의원 외 16명

2. 제안이유

가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이행

나.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연구결과 공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연구용역 투명성 제고

3. 주요내용

가. 연구용역결과 등 공개 사항을 규정하고 공개 시점, 공개 방법을 추가(안 제17조)

나.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할 수 있음과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함(안 제17조)

다. 용역결과 평가 시점과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실시를 규정(안 제18조)

4. 관계법령

가.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
나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
5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

가. 예산조치 : 예산담당관-10342(2022.9.16.)호

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)

나. 부패영향평가 : 감사관-13027(2022.9.14.)호

다. 규제심사 : 법무혁신담당관-10819(2022.9.15.)호

7. 검토의견

☐ 조례개정의 필요성

가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(‘20.8.3)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

나.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, 연구결과 공개 근거의 완비,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☐ 주요내용

- 안 제17조(결과의 공개)제1항에서는 연구용역결과, 평가결과, 활용계획 등 공개사항을 규정하고, 제2항에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*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며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의무화하고 있음

<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(요약)>

- ①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2.>
1.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)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2.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
 3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 4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예방, 수사, 공소제기 및 유지, 형 집행, 교정,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
 5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
 6.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. 다만,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
 - 가.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 - 나.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
 - 다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 - 라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 - 마.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 7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. 다만, 다음 각 목은 제외
 - 가.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(危害)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 - 나.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 8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- 안 제18조(결과의 평가)제3항에서는 연구용역 결과평가 시

점을 “3개월 이내”에서 “지체없이”로 하고 연구부정행위
검사를 포함하였으며 일부 자구의 의미를 구체화하였음

□ 종합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행안부 예규)는 용역을 일반·기술·학술연구용역으로 구분하고 '학술연구용역'은 “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'정책연구용역'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책연구용역, 학술연구용역, 연구용역 등으로 다양하게 쓰고 있는 실정임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0년 8월 「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」 권고안을 의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안의 2022년 1월 이행현황 제출을 요구한 바 있음
- 이와 관련,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, 연구결과 활용 부족 등 비효율적인 예산활용이 우려되므로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공정성·책임성 제고를 요구하였음
- 이에 따르면 기존 「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」는 1>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, 2> 연구결과, 평가 및 활용상황의 공개 근거 완비, 3>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자체 평가됨

- 이에 본 개정안은 위의 세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서,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연구결과가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기반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도민의 도정 참여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